

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- 산업자원부 -

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의 대체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석유화학부산물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,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석유수입·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 및 LPG의 품질검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

■ 개정안의 주요내용

○ 첫째, 대체연료유제도의 도입

-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대체연료유 제도를 도입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(헤비엔드 등)을 석유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,

- 기존의 석유제품과 같이 판매업등록, 비축의무, 판매부과금 부과 및 품질검사 등의 유통체계를 정비하여, 석유제품과 대체연료유간에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이 되도록 함

○ 둘째, 석유수입·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

- 원유 및 석유제품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3원에서 14원으로, 천연가스는 6,908원에서 9,750원으로 인상하고, 판매부과금은 등유는 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하고, 대체연료유 및 부탄에 대

한 판매부과금을 각각 리터당 17원, 1톤당 19,031원을 신설

○ 셋째, LPG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

- 현행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LPG를 품질검사대상 제품으로 추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사·난방용인 프로판이 수송용인 부탄으로의 혼·전용 및 품질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

■ 금번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

○ 그동안 석유유통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간에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석유화학부산물(Heavy-End)과 석유제품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석유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

○ LPG가 석유품질검사대상 제품으로 추가되어 엄격한 품질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품질불량 LPG의 유통 등을 둘러싼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

산업자원부공고 제2000-171호

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0년 11월 일

산업자원부장관

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석유화학부산물로 생산되어 석유제품의 대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체연료유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,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의 기본방침에 따른 석유수입·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 및 불량 석유가스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시행 등 석유사업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석유산업에서의 공정경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(1)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(안)

가.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탄화수소유중 휘발유·등유·경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대체연료유로 정함

나. 부산물의 생산자가 자기가 사용하거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화학제품생산자에게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체연료유에서 제외함

다. 대체연료유를 생산·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석유부과금의 징수대상자로 정함

라.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원유 및 석유제품은 1리터당 14원, 천연가스 1톤당 9,750원으로 정하고,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은 등유 1리터당 23원, 대체연료유 1리터당 17원, 부탄은 1톤당 19,031원으로 정함

(2)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

가. 대체연료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장시설 및 수송시설을 확보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함

나. 대체연료유를 비축대상 석유제품으로 정함

다. 대체연료유 및 석유가스(LPG)제품을 품질검사 대상제품으로 정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, 개인 또는 기업은 2000년12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(참조: 석유산업과장, 주소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 (02)500-2738, FAX (20)503-9649)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(법령개정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.mocie.go.kr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 또는 기업의 경우: 단체명 또는 기업체 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 ☎